



#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



**KPMG Indonesia**

November 2023

# 목차

들어가며	2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문서 작성 요건	3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이전가격	4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그룹 내 거래	5
비교가능성	6
조세분쟁 진행과정	7
연말조정	8
이전가격분쟁의 잠재적 해결책으로써의 APA	9

# 들어가며

인도네시아가 이전가격규정을 도입한지 약 30년이 경과한 바, 이전가격이슈가 과세당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된 것은 아마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전가격 문서화 요구사항, 팬데믹 종료와 관련된 특정 주제, 이전가격분쟁, 연말 조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KPMG 이전가격 전문가들은 상기 언급한 주제를 포함하여 이전가격과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꺼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문서 작성 요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가격 문서를 적절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란 전년도 기준 매출 5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IDR)를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인과 IDR 200억을 초과하는 유형자산 거래를 수행하였거나 또는 IDR 50억을 초과하는 용역, 이자, 라이선스 또는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회사가 당해 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2023년 기준 22%)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수행한다면, 해당 법인도 이전가격 문서를 작성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전가격 보고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통합보고서(Master File; MF), 개별보고서(Local File; LF),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 규정 PMK-213에 따르면 MF와 LF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CbCR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보고서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MF는 전체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요약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룹의 전체 구조, 사업 활동, 무형자산, 자금 활동 정보, 그리고 통합 재무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F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특정 그룹 회사를 검토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사업 활동, 특수관계자거래, 각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적용여부, 회사의 재무정보, 그리고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 사건과 같은 자세한 이전가격 정보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CbCR은 사업 활동, 매출, 세전 이익(손실), 선급세금, 조세부채, 자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그룹 내 각 회사에 대한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sup>1</sup> Government Regulation No. 213/PMK.03/2016

인도네시아의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요령은 대체로 OECD 지침과 유사하지만 일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보고서에는, 특히 MF와 LF의 경우,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문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모든 필수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 및 완료 하는데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이전가격

코로나-19 대유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다국적 기업(MNEs)이 채택한 이전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수요 감소와 종종 이익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가격 관점에서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매출 감소와 손실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주요 시발점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질문과 의의제기에 대비하여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방법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상가격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납세자

대응시 세무조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세무조사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국적 기업(MNEs)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이전가격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은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어떤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사업상 지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정상가격 원칙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그룹 내 거래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기업은 국외관계사로부터의 그룹 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특수관계사가 소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MNEs)에 있어서 그룹 내 서비스 제공 및 무형자산 이전과 같은 기업간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입니다.

KPMG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 년간 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분쟁을 통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장 자주 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를 밝혀 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Dispute 분쟁	Percentage of cases 비율
유형자산의 매입 혹은 매각	32%
그룹 내 서비스 거래	27%
무형자산 (노하우, 로열티, 상표권 등)	18%
기업간 자금대차	16%
비용배분	3%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보상 및 보전	1%
기타	3%

실무적으로 종종 세무조사관들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게 용역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혹은 유익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었고 해당 용역이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시에 작성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 메모, 교육 기록 및 해당 용역 제공을 위한 요건에 관한 정보는 용역 대가를 입증하는 데 매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마크업 수준은 주요 논점이 아닙니다.

무형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 특허 및 노하우와 관련한 보고서 및 무형자산에 대한 유형의 이익과 관련한 자료는 세무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그룹 내 서비스 및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성 분석은 정상가격원칙 적용의 핵심입니다. 비교가능성 분석의 주요 기능은 통제거래의 조건과 경제적 상황을 독립기업의 거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비교가능성 분석 수행시 제품 간 차이 분석에는 덜 비중을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폭넓은 비즈니스 기능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세무조사관은 종종 제품간 특성이 충분히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비교가능성 분석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 조세분쟁 진행과정

인도네시아 과세당국(ITO)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요청하면, ITO는 자동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세금 정정도 수행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조세분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세무조사
- 이의제기
- 조세불복 그리고
- 사법검토

ITO는 세금 정정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ITO는 이전가격 부문에 더 강경하며,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액적출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고 적출세액의 규모가 큼니다. 이전가격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이전가격 평가를 방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ITO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 적출세액을 결정한 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ITO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한다면, 납세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세무서의 상급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는 ITO의 결정을 뒤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로, 다음 단계인 조세불복으로 나아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세불복은 조세법원에서 진행되며 조세심판관이 감독합니다. 조세심판관들은 납세자와 ITO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청문회가 있으며, 조세심판관들은 납세자의 이전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가 납세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면, 납세자는 이후 사안을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KPMG는 고객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분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도울 것입니다.

# 연말조정

납세자들은 종종 유사한 기업들과 비교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래순이익률법을 기반으로 이전가격 정책을 미리 설정합니다. 이것은 주로 리스크가 제한적이거나 없는 기업에 대한 관행으로, 그러한 기업은 리스크의 실현을 막아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초과수익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전 계획은 이전가격 정책을 설정할 때 사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선제적 개념을 준수합니다. 핵심 개념은 특수관계인 거래 이전 또는 도중에 적절한 경제분석의 수행을 통해 목표수익률 및/또는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정상가격 범위 내의 수익을 설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는 선제적 개념을 준수합니다.)

납세자는 협약서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이전가격 정책을 계획하고 모델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연말 결과에 대해 더 적은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또는 목표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익 수준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 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 (이른바 "true-up") 또는 반대로 이전가격 정책을 기반으로 수익이 더 높아야 했던 경우에 하향 조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전가격 관점에서 연말조정은 필수적으로 명확한 협의와 서면 이전가격정책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연말조정이 단순 세무조정으로서 기말 감사 재무제표에 포함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향 조정은 그것이 이전가격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행되었더라도 과세당국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true up' 역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 논쟁이 덜 예상될 수 있지만 (다만, 실무적으로 항상 논쟁이 덜 하지는 않음), 간접세 및 관세와 같은 여타 인도네시아 이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true down' (더 나은 용어가 없는 한)도 원천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정책은 연중 수익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능하다면 실제 가격의 연속적 조정을 통해 예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분쟁의 잠재적 해결책으로써의 APA

인도네시아에서 조세분쟁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분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은 지속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APA는 이전가격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점차 일반적인 방법이 되어 가는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APA는 본질적으로 과세당국(들)과 납세자 간에 맺어진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기업간 거래의 세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인도네시아 APA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만 참여할 수도 있으며(일방적 APA), 두 개 이상의 당국(양자간 또는 다자간 APA)이 참여할 수도 있고, 5년 동안 체결됩니다.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APA가 30년 이상 활용되어 왔지만(1991년 Apple Computer Corporation은 미국에서 최초의 APA를 획득), 인도네시아에서의 APA 는 훨씬 최근입니다. 2003년부터 ITO는 협약을 협상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청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수 년이 소요되었으며, 따라서 매우 소수의 납세자만이 신청했습니다. 2016년에 이르러서야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로 성공적으로 완료된 APA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ITO는 APA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ITO는 납세자에게 더 매력적인 방향으로 APA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게 가장 긍정적인 변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절차의 단순화로 소요시간 단축
- APA 유효기간 연장 (3년 또는 4년에서 5년)
- 연속기간에 대한 APA연장이 더 쉬워짐
-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급신청 가능
- 연 보고절차 의 단순화

<sup>2</sup> As of the date of this publication 본 출판물의 발행일 기준

<sup>3</sup>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0, Pasal 18 ayat (3a)

<sup>4</sup> PMK No. 22/PMK.03/2020

APA 체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납세자는 이전가격 정책의 적용에 대해 장기간의 확신을 얻을 것이며, 세무조사 및 과세당국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세분쟁과 대규모 이전가격 정정을 자주 경험하는 납세자는 APA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APA의 혜택은 ITO와의 성공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불확실합니다. 둘째, APA 신청과 최종 완료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가 다른 관할 국가와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양자간 APA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신청 절차에 도움을 주는 외부 컨설턴트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정보가 ITO에게 제출되어 거래가 면밀히 조사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ITO는 APA 과정에서 획득한 문서를 세무조사나 세무검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실무에서 항상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신설회사는 APA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APA 신청 전에 납세자는 최소 3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이전가격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APA 신청시 과거 3개 회계연도 세무신고서상 영업이익익보다 작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전가격방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APA 프로그램은 아직 높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TO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작 이후 APA 신청서(일방적 및 양자간 APA)는 103건만 접수되었으며, 이 중 52건은 완료되었고 51건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2021년 이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APA를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PA 프로그램은 관심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APA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몇 년간 조세분쟁으로 누적된 비용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APA는 많은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준수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컨설팅을 통해 우리는 ITO 내 국제부문이 납세자와의 논의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2023년 및 그 이후에 더 많은 성공적인 APA가 관찰될 것으로 우리는 낙관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고객의 세무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APA를 고려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sup>5</sup> APA MAP | Direktorat Jenderal Pajak, APA and MAP statistics pre-2016 to 2022, visited 31 March 2023.

# Contact us

## **KPMG Advisory Indonesia**

### **Tax Services**

33<sup>rd</sup> Floor, Wisma GKBI

28, Jl. Jend. Sudirman

Jakarta 10210, Indonesia

**T:** +6221 570 4888

**F:** +6221 570 5888

### **Abraham Pierre**

#### **Head of Tax Services**

Abraham.Pierre@kpmg.co.id

### **Iwan Hoo**

Iwan.Hoo@kpmg.co.id

### **Aaron Brunier**

Aaron.Brunier@kpmg.co.id

### **Fachrur Nugroho**

Fachrur.Nugroho@kpmg.co.id

### **김 주명**

Joomyung.kim@kpmg.co.id

**[kpmg.com/id](https://www.kpmg.com/id)**

Some or all of the services described herein may not be permissible for KPMG audit clients and their affiliates or related entitie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23 KPMG Advisory Indonesia, an Indonesian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